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관 한 연구보고서



·

***I. 서론***

2012년 미얀마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을 새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미얀마에서 새로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개혁이 불어옴에 따라 기존 1998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외국인투자법을 전면적으로 새로 개정함에 따라서 전 세계인의 이목 이 주목되고 있다.

***II.* 개략적 현황**

미얀마 의회는 7월 말에 외국인 투자법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고

위공무원은 자원부유국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국민들을 빈곤 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미얀마의 투자회사 부서 차장은 Tin Ko Win “일단 법안이 승인되 면, 국제적 비즈니스가 미얀마에 유입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해외투자 파트너십, 합작회사나 투자 등에 대비하고 있 다”고 하였다.

투자법에서는 외국기업에게 조세 감면 외 개인으로부터 토지 임대에 있어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에 있어 미얀마에 투자할 유인이 되는 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체계가 불투명한데 대하여 걱정되는 면이 있다.

명목상의 문민정부로 지난 50년간 엄한 군사제체를 유지해오던 것은 이제 규제완화로 바뀌어 가고 있고 미디어 및 인터넷에서 다른 견해 및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수용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기대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였고 경제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지 난 주 오바마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투자하기를 권고하였 다.

몇몇 미국 회사들은 벌써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코카콜라사는 60년만 에 처음으로 미얀마에서 콜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GE사 역시 전자기기의 공급을 위한 미얀마 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 다고 전했다.

Tin Ko Win 차장은 지금이 해외투자자들에 있어서 가장 사업하기 좋을 때로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기발전이나 오일, 천연가스 생산 등 분야에 있어 정부의 투자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제안법은 국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출처: <http://www.myanmar-business.org/2012/07/myanmar-investment-law-expected-this.html>

***III.*** 미얀마투자위원회 행정명령 1/2012의 주

요 내용과 문제점

1. 미얀마 투자위원회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제 2 장**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3.아래의 사업자들은 100%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이 허용 된다.

a.미얀마 국민에 의한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직접적 인 관여 없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 고정자산(부동산),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의 100% 투자한 외 국인 사업가

b.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얀마 국민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 외국인 사업가

c.미얀마 관습법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형식상의 혼인관계로 있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 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하지 않고 당 국민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4. 일반 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미얀마 연방 투자법의 개정에 서 허용하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호를 따라야 한다.

a. 미얀마 연방 투자법 개정서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b. 제출 되는 선청서에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2)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종목)와 소재지(장소), 기존 운영되고 있던 허가서(MIC) 번호, 허가 일자 및 투자 금액

(3)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얀마 국민과 이사명단의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성명, 등록번호(NRC#) 및 주소

(4) 운영하는 사업의 최근 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5)

(6)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

사업을 운영하고자(명의를 외국인 투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해당국 대

사관의 추천서 및 여권 사본

c. 전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 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야 한다.

5. 외국인 투자로 사업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 후,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심사한다.

a. 각 정부 중앙 부처와 관련 대사관에 통보하여, 투자에 관련한 외국인들이 미얀마와 각

국가에서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b. 운영중인 사업이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허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

다.

c.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심사한다.

d. 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중인 사업이 현 사업장에서의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 면에서 허가에 적당한지를 심사한다.

**제 3 장**

**합작투자로의 변경(joint-venture)**

8.다음의 사업가들은 소유 사업을 외국인 합작 투자로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a.명목상의 미얀마인 투자인 사업임에도 전 사업의 고정자산, 현금, 유동자산, 부채를 부분 적으로 부담하는 미얀마 국민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b.미얀마 국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c.사업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관습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결혼한

외국인과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법적으로 입양한 외국인.

현재 미얀마국민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사업자 명의

를 실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명의를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거나 합작투자로 변경하도록 하였음

\* 법제처 세계법제 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출처:<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M/law/26343?astSeq=475>

2. 미얀마투자위원회 행정명령 1/2012의 문제점

해당 명령에 대하여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무열 변호사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음

▢ 지나치게 짧은 신청기간

▢ 사업에 필요한 세금납부 여부의 심사

(1). 지나치게 짧은 신청기간

2장 4조의 c체는 “전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 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90일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

또한 이 기간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것이 강행규정이라면 90일이 넘은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 어떤 페널티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2). 사업에 필요한 세금납부 여부의 심사

다음으로 제2장 5조에서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얀마 정부에서 외국인 사업자들의 납세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신청서 제 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65540>

&kind=ba09&page=1

실제로 미얀마 내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위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초까지도 MIC에 전환신청이 된 사례가 1건도 없으며, 이는 까다로운 전환절차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 견이 있다.

\*출처: 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http://www.js-horizon.com/new/news/publications.html?ptype=view&idx=3472&page=3&cod](http://www.js-horizon.com/new/news/publications.html?ptype=view&amp;idx=3472&amp;page=3&amp;cod)

e=publications

***IV.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한 의의는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

으로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 측가능하게 한다는 점임.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1.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기존의 외국인 100% 단독 또는 35%이상 합작투자의 형태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상호합의된 계약 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추가.

-> 이는 주로 외국인과 미얀마 정부의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

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외국인투자 금액의 적용환율에 대하여 투자위원회(MIC)의 평가규 정을 삭제하고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등록가능하게 함.

->미얀마 정부가 2012년 4월 변동환율을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에 대해서 시장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3.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3년간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 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 중 사업확대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승인 이후 관세 등을 감면. 또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감면하고, 수출 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도 관세를 감면.

4.

-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 농업, 축산 부분의 투자를 위한 외 국인투자에 대하여 최초 30년까지 임대를 허용하였고, 그 이후 임대 기간은 15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 - 기존에는 정부 토지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민간소유의 토지도 임대가 가능- 낙후 지역에 대 해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

5.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미얀마 내국인(내국법인)에 게 주식 및 사업을 양도 가능.

-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미얀마 내국인에만 허용되는 업종도 수 행 가능

- 사업연장, 투자금 증가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외국인

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혜택의 적용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외국인투자자가 자산을 처분, 교환, 양도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관련 수익의 50%로 제한.

-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기존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6.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 야 하고, 부동산의 재임대ㆍ담보 및 주식 또는 사업의 양도 시 투자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 며 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

7.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외국인회사가 비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만 을 고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설 립 후 5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10년까지는 50%, 15년까지 는 75%를 미얀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함.

- 외국인회사가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영 노동사무소 또 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만 채용.

8. 분쟁해결의 절차 신설

-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먼저 당사자들이 우 호적으로 해결

;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분

쟁해결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

-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얀마의 현행법을 따르도록 함

\*출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성, 정철 변호사의 글을 참고 [http://www.js-horizon.com/new/news/publications.html?ptype=view&idx=3610&page=1&cod](http://www.js-horizon.com/new/news/publications.html?ptype=view&amp;idx=3610&amp;page=1&amp;cod)

e=publications